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23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. 31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1-1외 1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,302.7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대표 김향희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56 센추리2호스텔 1501호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. 1. 24.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 - 1) 대지면적 : 2,302.7㎡
 - 2) 지하2층/지상7층, 공동주택(아파트) 2개동(55세대)
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및 보류지 해당없음)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	
	계	59.0623㎡	61.1795㎡	71.1108㎡	73.1369㎡
계	55	25	2	2	26
토지등소유자	36	15	1	2	18
보류시설	-	-	-	-	-
일반분양	19	10	1	-	8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19. 4. 15.~2019. 6. 15.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다.